

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민법」 제38조(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) 및 「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, 취소 사실을 대상 법인에게 안내하려고 하나 대상 법인의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1. 29.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설립허가 취소 법인(3개사)

- 사단법인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(등록번호 : 254121-0025197, 등기번호 : 001023)
- 사단법인 한국개발자창업협회(등록번호 : 110121-0121964, 등기번호 : 012196)
- 재단법인 미소기업창조재단(등록번호 : 110222-0019719, 등기번호 : 006708)

2. 취소 사유

- ①법령 의무사항 미이행, ②설립허가 조건 위반(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서 미제출), ③법인 주사무소 부재 등 사실상 법인 활동 중단

3. 취소일자 : 2024. 1. 29.

4. 공고기간 : 2024. 1. 29. ~ 2. 23.

5. 기타 사항

-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, 아래와 같이 「행정심판법」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-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.
 -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. 끝.